

#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

##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경훈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하고 23명이 찬성한 「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조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시장이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이를 협력할 수 있도록 ‘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’(안 제3조 ~ 제4조)을 규정하였고, ‘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에 관한 사항’(안 제5조), ‘절수설비 등의 설치

지원에 관한 사항'(안 제6조)을 추가하여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절수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'수돗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'(안 제7조), '포상에 관한 사항'(안 제8조)을 규정하여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지원하고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